조약 체결 전의 국내외 정세

- 。 청나라는 1842년 남경(난징)조약, 일본은 1854년 미일화친조약 체결로 개항
- . 한국도 비슷한 시기 서양과 접촉, 충돌

병인양요(1866)

- 。배경: 병인박해, 1866년초에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리고 프랑스신부와 조선인 천주교 신자 수천명을 처형. 프랑스 선교사는 12명 중 9명이 잡혀 처형되었으며, 3명은 화를 면하였는데, 그 중리델(Ridel) 신부는 중국으로 탈출하여 주중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Roze, P.G. 로세(魯勢)]에게 박해소식을 전하면서 보복원정을 촉구했다. 이에 로즈가 대함대를 이끌고 침입하였다.
- 。 1차 원정: 강화해협을 중심으로 한양까지의 수로를 탐사하기 위한 예비적 탐사원정. 로즈는 군함 3척을 이끌고 9월 18일부터 10월1일까지 한양의 양화진(楊花津), 서강(西江)까지 올라와서 세밀한 지세정찰과 수로탐사를 한 끝에 지도 3장을 만들어 돌아갔다.
- 。 2차 원정: 로즈는 10월 5일에 한강 봉쇄를 선언하고, 10월 11일에 제2차 조선 원정길. 군함 7척, 함재 대포 10문, 총병력 1,000명 향도 및 수로 안내인으로 리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 최선일(崔善一), 최인서(崔仁瑞), 심순여(沈順汝) 등 3명을 대동하고 강화도로 내침. 10월 16일에 강화부를 점령하고, "우리는 자비로운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 동포 형제를 학살한 자를 처벌하러 조선에 왔다." 라는 내용의 포고 문을 발표. 강화도 수비에 실패하여 사태가 위급하게 되자, 정부는 순무영(巡撫營)을 설치, 대장에 이경하(李景夏), 중군에 이용희(李容熙), 천총(千總)에 양헌수를 임명하고, 출정하게 하였다. 양헌수는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있다가 천총(千總)에 임명되어, 대군을 이끌고 통진부(通津府)에 진을 치고, 강화도 수복계획을 구상하였다.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10월 26일에 문수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을 압도하였다.
- 。 정족산성 전투: 양헌수는 화력 면에서 절대열세인 조선군의 전력을 고려하여 강화도 수복 계획을 세웠다. 양헌수의 군대 549명이 덕포에서 프랑스군에 들키지 않고 한밤중에 잠도작전(潛渡作戰)으로 강화해협을 건너 11월 7일 정족산성을 점거하고 농성하였다. 양헌수는 정족진을 결성한 뒤, 남문과 동문에 각각 포수 161명, 150명을 배치하고, 서문과 북문에는 경군(京軍) 및 향군(鄉軍) 157명을 배치, 매복하시켰다. 조선군이 강화해협을 건너 정족산성에서 농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로즈는 올리비에(Ollivier) 대령에게 정족산성 공격을 명하였다. 11월 9일 올리비에는 160명의 분견대를 이끌고, 야포 없이 경무장한 채 정족산성 공략에 나섰다. 조선군이 동문과 남문으로 쳐들어오는 프랑스군에게 일제히 포격을 가함으로써 일대격전이 벌어졌다. 연전연패하였으나 강화 지형에 익숙한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격퇴. 정족산성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프랑스군 철수.

신미양요(1871)

- 。미국의 아시아함대가 1866년 8월의 제너럴셔먼호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강화도 침략
- 。배경: 미국은 1866년 8월 평양 대동강에서 있었던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개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 경과: 1871년 미국은 조선을 개항하기 위하여 조선 원정을 결행하였다. 미국은 주청미국공사 로우(Law, F.F.)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는 해군함대를 동원하여 조선 원정에 나섰다. 로저스는 서울로 가기 위한 수로를 탐색하려고 조선 대표에게 강화해협을 탐측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6월 1일 강화해협의 탐측항행을 강행하였다. 함대가 손돌목에 이르자 강화의 남장포대와 김포의 덕포포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조선과 미국은 최초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를 손돌목포격사건이라 한다. 손돌목포격사건 직후 미국 대표는 조선 측에게 평화적으로 탐측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군함대에 대한 포격은 비인도적 야만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조선 대표를 파견해서 협상할 것, 포격사건에 대한 사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조건을 거부하면 10일 후에 보복상륙작전을 벌이겠다고 위협. 조선 측은 협상 거부.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6월 10일 초지진에 상륙작전 시작. 10개 중대로 상륙군을 편성하고, 포병대, 공병대, 의무대, 사진촬영반 등을 동원하였다. 미국은 해상 함포사격으로 초지진을 초토화시킨 뒤 수륙양면공격으로 초지진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6월 11일에는 덕진진을 무혈점거하였고, 이어서 광성보 전투가이어졌다. 광성보에는 진무중군 어재연이 이끄는 조선수비병 600여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군이 광성보에대한 수륙양면 포격을 한 시간 동안이나 벌인 끝에 광성보는 함락되었다. 조선군은 수자기를 빼앗겼으며, 미군은 광성보에 성조기를 게양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전사 350명, 부상 20명이었고 미군은 전사 3명 부상 10명이었다.

강화도 조약의 배경

서계 문제

- 。메이지 신정부는 쓰시마번(대마도)으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조선정부에 대하여 천황정권의 성립과 신정부가 외교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통고하도록 명령
- 。쓰시마번은 조선국 담당관리의 양해를 얻기 위하여 정식 사절(大修大差使)의 파견에 앞서 선발관원(幹事裁判)을 파견하기로 결정 <-- 가까운 시일내 정식 사절을 파견하여 왕정복고를 통지한다는 사실과 외교문 서에는 신정부가 수여한 도서(圖署, 新印, 즉 새로운 인장)를 사용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는 것
- 。 그러나 조선측은 외교 격식에 어긋나는 사실임을 들어 서계의 접수를 거부
- 。메이지 정부는 1870년 1월 7일 사다 하쿠보(佐田白茅)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을 조선에 파견, 조 선정부가 최종적으로 서계 접수를 거절한 것을 확인 --> 일본 조야에서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이 비등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 제1안은 조선과 단교하여 사태를 방임한다는 단교론(斷交論)
- 。 제2안은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조선측이 거절할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한다는 안
- 。 제3안은 조선과의 수교에 앞서 청국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한 다음 조선과 교섭한다는 우회적으로 접근 하는 안

고종의 친정과 대외정책

- 。 대원군 실각, 고종 친정
- 。고종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 1874년 9월 3일 현석운과 모리야마는 국교재개 문제에 대해 회담

운요호사건과 조선정부의 대응

- , 모리야마 일행은 조선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을 동원할 것을 제안
- 。4월 20일 운요호가 부산에 입항, 5월 9일에는 군함 다이니테이보호(第二丁卯號)가 부산항으로 들어와 운요호와 합류
- . 8월 21일 운요호가 한강 하구 강화도 해안에 정박하였다가 선원 일부가 작은 배로 사전 예고없이 한강 하구를 거슬러 항해 --> 초지진 포대에서 포격을 감행, 운요호는 함포사격으로 초지진을 파괴

강화도조약의 체결 과정

- 。 조선 정부는 신헌을 접견대관으로 파견(부관 윤자승)
 - 1차 회담: 운요호 사건의 책임을 물음
 - 2차 회담: 13개 조항의 조약 초안서를 제출하며 조약체결을 요구
 - 3차 회담: 회답 지연시 무력 사용을 통고
- 。이후 신헌은 일본측과 조약문 내용에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2월 3일 조약을 강정하고, 2월 6일 조인식

조일수호조규의 내용과 성격

。강화도조약체제: 1876년 2월 26일 강화도에서 조인하였던 < 조일수호조규 > 와 같은해 8월 24일 체결하

- 。 조일수호조규는 전문(前文)과 12개 조관으로 구성
 - 1관 조선국(朝鮮國)은 자주국(自主之邦)이며 일본과 더불어(與日本國)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유(保有平等之權)한다. --> 청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자 하였기 때문
 - 제2관 종래의 외교관행 변경에 관한 조항 --> 사신의 상대국 수도 체류기간과 파견시기 등에 대해서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 실질적으로는 수도에 외교사절의 상주와 나아가 상주외교공관 설치가가능
 - 제3관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관한 규정--> 일본은 일본어를 사용하며, 조선은 한문을 사용하기로 결정. 표의문자인 한문 해석에 있어 조·일 양국의 해석이 상치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자국어의 해석에 근거하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4관&5관 개항장의 선정과 설치 및 운영의 대강에 관한 조항 --> 일본은 향후 조선땅에서 그들 만(외국인)의 전관 거류지 즉 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5관은 부산 이외에 추가로 2개 항구를 개항하기로 약속한 조항
 - 제7관 조선 연근해의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고 측량자료를 가지고 지도작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8관&9관&10관
 - 、'시의(時宜)에 따라 일본상인을 관리하는 관리를 설치'--> 개항장에 언제든지 '영사관'을 설치하여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관계되는 사무를 볼 수 있게 되었음
 - 、9관 상업 활동 중 정당하지 못한 거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자국의 관리가 이를 조사하나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의 의무 등은 지지 않음
 - 、10관 개항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인에 대한 조사 처벌은 자국의 관리가 이를 담당 하여 공평하고 타당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규정
 - --> 조선은 이들 조항에 의하여 개항지에서 활동하는 일본상인의 활동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통제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나아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이들을 체포하거나 조사 또는 처벌하는 데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 12관 조약의 효력 발생과 유효기간에 관련된 것 --> 조약의 체결 후 비준 절차에 대한 규정없이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